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 화해권고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 조사 -
**Empirical Study on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 Survey on Awareness of Members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Committee concerning Administrative Condition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

윤 현 석** · 전 명 길***

Yoon, Hyun-Seok · Jeon, Myung-Gil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조사방법
- IV. 조사결과
- V. 논의 및 결론

┃ 접수일자: 2019년 01월 26일 ┃ 심사일자: 2019년 01월 31일 ┃ 게재확정: 2019년 02월 15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8147)

** 경찰학박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제1저자

*** 법학박사,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교신저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화해권고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화해권고위원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 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 52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권고 위원들의 활동 경력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건수는 10번 정도로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였다. 둘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년과의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해권고결정시 경찰의견서나 피의자신분조서, 진술조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였으며,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진술 태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넷째,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으로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현재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화해권고위원 워크숍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화해권고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년사법, 소년사건, 회복적 사법, 화해권고제도, 화해권고위원.

I. 서 론

성인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년범죄를 규율하는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범죄에 대하여 성인과 소년을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바로 소년의 무한한 변화가능성과 주변의 환경과 교육에 따라 소년들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소년들의 환경이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나아가 재판이란 다소 경직되고 낙인을 찍는 절차로 소년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적인 절차에 따라 소년의 재비행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년사법에서도 기존의 응보형 모델과 사회복지 모델의 효과에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법률 제 8439호)을 통해 화해권고의 규정을 신설하여 소년사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화해권고제도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운영은 판사가 화해를 주도하게 되어 자율성이 반감되며 물질적 배상에 중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당사자 간 진정한 갈등의 해소라는 회복적 사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과 시기, 형식적 운영, 전문가 부족,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에서 다이버전의 확대나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적용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실천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서 화해권고제도는 2010년 5월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화해권고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다.²⁾ 하태선(2012)이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험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를 실시

1) 신한미,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시도: 청소년참여법정과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아세아여성법학」, 제14권,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1, p.69.

2) 김은경, “소년법상 화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단계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선의중,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신한미, 앞의 논문, 2011;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천정환, “소년법에서의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하였는데 화해권고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당사자의 경험만을 탐색하였다.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역할 및 제도 인식을 분석하고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이 우리의 소년사법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역할 및 인식,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과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보완점 등을 제시하여 화해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소년사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화해권고제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소년사법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이며, 범죄소년을 비롯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³⁾ 또한 소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지칭하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과 구별하여 특별한 절차에 따라 특별한 처우를 하기 위한 법체계를 뜻한다.⁴⁾ 회복적 사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3) 이은영, “소년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면.

4)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62면; 이은영, 앞의 논문, 8면.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그 해결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을 해결 하려는 절차를 의미한다.⁵⁾ 가해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적 대응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지닌다.⁶⁾ 피해자의 관여와 회복, 가해자의 책임수용, 지역사회 참여와 지지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회복적 사법이 특별히 소년사건을 다루는 보다 나은 대응방법이며, 소년사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화해권고의 운영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적합하게 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2. 화해권고제도

소년법 제25조3에 화해권고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⁷⁾ 즉,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경험을 가해자에게 말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통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⁸⁾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함으로써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소년보호재판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⁹⁾

3. 선행연구

-
- 5) 주재웅,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7면.
 - 6)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04-205면.
 -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일 2018년 10월 11일)
 - 8) 하태선,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험에 관한 다중사례 연구: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참여자를 중심으로”, 충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7면.
 - 9) 선의중, 앞의 논문, 2010, p.37.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국내연구는 소년사건에서 화해권고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해결전문가의 확보, 다양한 사건으로의 확대, 당사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하태선·배임호(2014)가 화해권고제도를 참여한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험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를 통해 관계회복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요인과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지만 당사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외연구는 소년사법에서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소년사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다.¹⁰⁾ 일반적으로 성과척도로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만족도, 공정성, 피해배상율, 재범율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정리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오는 편이었으며 다만, Umbreit, Coates and Vos(2002)의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의 60%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거부하였는데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가해자에게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결과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었다. 표본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은 만족도가 높으면 회복적 사법실천의 참여자들의 대부분(거의 80%이상)은 지역, 문화,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과정이 모두에게 공정했고, 결과 또한 공정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배상은 조정의 결과로 보고 있었으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의 형태가 가장 높은 피해배상으로 나타났다. 재범율은 소년사건 대부분에서 재범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경험이 있는 재범자들은 비교집단의 재범자들에 비해서 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0) Latimer, J., Dowden, C., and Muise, D.,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Practices: A Meta-Analysis",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Methodological Series, 2001; Umbreit, M. S., Coates, R. B., and Vos, B.,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A Review of 63 Empirical Studies in 5 Countries",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making, Univ. of Minnesota, 2002; Kathleen, D., "Mind the gap: restorative justice in theory and practice", in A von Hirsch, J. Roberts, A. E. Bottoms, K. Roach and M. Schiff (eds)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s?", Oxford and Portland, Orgeon: Hart Publishing, 2003.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6년~2018년 화해권고위원으로 위촉된 자 서울가정법원 30명, 부산가정법원 13명, 광주가정법원 9명이며, 각 가정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제도 담당자 협조를 통해 명부를 확보했으며 조사대상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8	73.1
	여	14	26.9
지역	서울가정법원	30	57.7
	부산가정법원	13	25.0
	광주가정법원	9	17.3
학력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12	23.1
	대학원(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	10	19.2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18	34.6
	대학교 졸업	12	23.1
직업 (복수응답)	변호사	12	23.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	14	26.9
	공무원	4	7.7
	교사	10	19.2
	교수	14	26.9
자격증 종류 (복수응답)	변호사	14	26.9
	임상심리사	2	3.8
	전문상담교사	4	7.7
	상담심리사(상담심리전문가)	26	50.0
	사회복지사	18	34.6
	범죄심리전문가	2	3.8
	의사면허증	2	3.8
	교원자격증	8	15.4

2. 조사 설문지

본 설문지는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현행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 및 화해권고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보완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참여관찰 조사 ‘Sociometric Checklist’를 사용하여 소년법원에서 시행되는 화해권고제도를 직접 평가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에서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소년사건에서 화해권고제도의 실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변인은 화해권고위원의 활동 경력(6문항),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경험(8문항), 화해권고결정 관련 내용(7문항), 화해권고위원의 역할 및 인식(5문항),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7문항),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4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인	문항내용	문항 수
화해권고위원의 활동 경력	활동 연수, 선발 계기, 화해권고위원 시작 동기, 다른 화해권고위원들과 교류 여부, 교류 형태 등	6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실태	소년별 적정 면담시간, 화해권고사건 대상자 관계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	8
화해권고결정 관련 내용	화해권고결정시 참조 자료, 화해권고결정시 고려 사항, 화해권고결정시 화해권고위원의 개인차 등	7
화해권고위원의 역할 및 인식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화해권고위원의 업무 수행 능력, 업무에 가지는 장점 등	5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정기적인 교육 필요성,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 등	7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화해권고 활동의 어려움, 보완점 등	4
전체		38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실시 전 화해권고위원 86명에게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지 배부 일정을 확인하고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시 조사대상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설문지의 내용을 숙지시켰다. 설문지 수거는 같은 방식으로 2018년 4월 23일부터 최종 6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5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변인의 내용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1. 화해권고위원의 활동 경력

(1) 화해권고위원 활동 기간, 선발계기 및 시작 동기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 16명(30.7%), 5년 이상 8년 미만 14명(27.0%), 2년 미만 12명(23.1%), 8년 이상 10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 선발 계기는 아래 <표 3>과 같이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관계공무원의 권유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음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3> 화해권고위원 선발 계기

내 용	빈도	백분율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음	14	26.9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18	34.6
기존 화해권고위원의 권유	10	19.2
관계공무원의 권유	14	26.9

화해권고위원 시작 동기는 아래 <표 4>와 같이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기관 권유로, 지인권유나 요청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화해권고위원 시작 동기

내 용	빈도	백분율
사명감	0	0
비행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22	42.3
관련기관 권유로	12	23.1
지인권유나 요청	4	7.7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0	0.0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4	26.9
경제적 동기	0	0.0

(2) 화해권고위원의 평균 한 해 담당 사건 수, 교류 여부 및 형태

화해권고위원이 평균 한 해 담당하는 총 사건 수는 10건 미만 34명(65.4%), 10건 이상 15건 미만 16명(30.8%), 15건 이상 2명(3.8%) 으로 나타났다. 다른 화해권고위원과의 교류 여부는 52명(100%) 모두가 다른 화해권고위원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류형태는 워크숍 36명(69.2%), 개별적 연락 18명(34.6%), 기타 14명(26.9%) 순으로 나타났다.

2.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실태

(1) 개별 소년별 면담 소요 시간 및 적정 면담 시간

개별 소년별 면담 소요 시간은 90분 이상 120분 미만 20명(38.5%), 60분 미만과 60분 이상 90분 미만이 각각 14명(26.9%), 120분 이상 4명(7.6%) 순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이 생각하는 적정 면담 시간은 아래 <표 5>와 같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 60분 미만과 60분 이상 90분 미만, 120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소년당 접견 횟수는 화해권고위원 모두 두 번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별 소년별 적정 면담 시간

내 용	빈도	백분율
60분 미만	10	19.2
60분 이상 90분 미만	10	19.2
90분 이상 120분 미만	26	50.0
120분 이상	6	11.6

(2) 소년접견 형태, 관계인 접견여부 및 면담 형태

소년접견 형태는 화해권고위원 사무실 52명(100%), 분류심사원(소년원) 방문 및 전화 22명(42.3%), 편지 및 전자메일 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관계인과의 접견은 화해권고위원 모두 만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인 면담 형태는 화해권고위원 사무실 52명(100%), 편지 및 이메일 52명(100%), 전화 36명(69.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관계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부모, 학교 선생님, 친구 또는 선후배, 형제, 조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화해권고사건 대상자 관계인

내 용(중복응답)	빈도	백분율
부모	52	100
형제	8	15.4
학교선생님	26	50.0
친구 또는 선후배	24	46.2
조부모	4	4.7

(3)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 <표 7>과 같이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고, 직원들과의 협조 및 의사소통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은 잘 되는지는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년과 면담시 소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가는 화해권고위원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로 평가했다. 면담시 부모 협조는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협조가 어려운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협조가 되는 편이었으며,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7>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 만족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면담장소의 안정감	0 (0%)	0 (0%)	8 (15.4%)	36 (69.2%)	8 (15.4%)
직원과의 협조 및 의사 소통	0 (0%)	0 (0%)	0 (0%)	28 (53.8%)	24 (46.2%)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	0 (0%)	0 (0%)	6 (11.5%)	38 (73.1%)	8 (15.4%)
소년과 면담시 소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0 (0%)	0 (0%)	0 (0%)	10 (19.2%)	42 (80.8%)
면담시 부모들의 협조	0 (0%)	24 (46.2%)	20 (38.5%)	4 (7.7%)	14 (26.9%)
면담시 소년들의 협조	0 (0%)	2 (3.8%)	6 (11.5%)	30 (57.7%)	14 (26.9%)
면담시 소년들의 반성 및 참회 정도가 높은지	0 (0%)	0 (0%)	12 (23.1%)	32 (61.5%)	8 (15.4%)

3. 화해권고결정 관련 내용

(1) 화해권고결정시 참조 자료 및 고려 사항

화해권고결정시 참조 자료는 경찰의견서 50명(96.2%), 피의자신분조서(범죄소년) 또는 진술조서(촉법·우범소년) 48명(92.3%),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38명(73.1%), 사건송치서 20명(38.5%), 경찰의 비행성예측자료표 14명(26.9%), 법원의 결정전 조사서 14명(26.9%) 순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결정시 고려 사항은 아래 <표 8>과 같이 범죄관련사항과 범죄경력은 대부분의 위원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과 성장과정,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는 각각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는 화해권고결정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각각 12명(23.1%), 4명(7.7%)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진술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료와 재범 가능성은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피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는 화해권고위원 대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화해권고결정시 고려 사항

내용(중복응답)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범죄관련사항	0 (0%)	0 (0%)	0 (0%)	10 (19.2%)	42 (80.8%)
범죄경력	0 (0%)	0 (0%)	0 (0%)	18 (34.6%)	34 (65.4%)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0 (0%)	0 (0%)	4 (7.7%)	26 (50.0%)	22 (42.3%)
성장과정	0 (0%)	0 (0%)	8 (15.4%)	22 (42.3%)	22 (42.3%)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0 (0%)	0 (0%)	4 (7.7%)	24 (46.2%)	24 (46.2%)
학력 및 학교생활	0 (0%)	12 (23.1%)	14 (26.9%)	14 (26.9%)	12 (23.1%)
교우관계	0 (0%)	4 (7.7%)	10 (19.2%)	20 (38.5%)	18 (34.6%)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0 (0%)	0 (0%)	2 (3.8%)	20 (38.5%)	30 (57.7%)
진술태도	0 (0%)	0 (0%)	4 (7.7%)	24 (46.2%)	24 (46.2%)
향후 생활 계획	0 (0%)	0 (0%)	0 (0%)	28 (53.8%)	24 (46.2%)
소년에 대한 이전 조사자료들	0 (0%)	0 (0%)	12 (23.1%)	28 (53.8%)	12 (23.1%)
재범 가능성	0 (0%)	0 (0%)	2 (3.8%)	30 (57.7%)	20 (38.5%)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0 (0%)	0 (0%)	0 (0%)	20 (38.5%)	32 (61.5%)

(2) 면담시 소년의 태도, 화해권고위원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

면담시 소년의 태도(용도, 언행, 후회 및 참회의 정도)는 화해권고 결정에 매우 영향을 준다 36명(69.2%), 약간 영향을 준다 12명(23.1%),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명(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해권고결정에 있어 화해권고위원의 개인차는 약간 영향을 준다 24명(46.2%),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명(38.5%), 매우 영향을 준다 8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에 성폭력범죄를 28명(53.8%)이 답하였는데 화해권고위원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화해권고위원의 역할 및 인식

(1)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은 아래 <표 9>와 같이 본인이 하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끼는지는 화해권고위원 대부분이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여기고 있으며, 다른 화해권고위원들과의 정보교류는 대부분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지는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사의 최종결정에는 대부분 심정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는 대부분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하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낀다.	0 (0%)	0 (0%)	4 (7.7%)	26 (50.0%)	22 (42.3%)
다른 화해권고위원들과의 정보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 (0%)	0 (0%)	12 (23.1%)	36 (69.2%)	4 (7.7%)
내 자신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12 (23.1%)	0 (0%)	6 (11.5%)	30 (57.7%)	4 (7.7%)

판사의 최종결정에 심정으로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다.	32 (61.5%)	18 (34.6%)	2 (3.8%)	0 (0%)	0 (0%)
내가 하는 일은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0 (0%)	0 (0%)	4 (7.7%)	34 (65.4%)	14 (26.9%)

(2) 화해권고위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직업의 장점 분야

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지는 매우 그렇다 28명(53.8%), 약간 그렇다 24명(46.2%)로 나타났으며, 관련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는 약간 그렇다 32명(61.5%), 매우 그렇다 20명(38.5%)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는 매우 그렇다 38명(73.1%), 약간 그렇다 14명(26.9%)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 10>과 같이 내 직업의 어떠한 점이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 및 상담 기술에 대한 이해, 법률적 지식, 청소년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화해권고위원 활동 업무에 가지는 직업의 장점

내 용	빈도	백분율
법률적 지식	18	34.6
청소년에 대한 이해	12	23.1
심리 및 상담기술에 대한 이해	22	42.3

5.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정기교육의 필요성, 교육경험 및 교육내용의 충실 정도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지는 매우 필요하다 28명(53.8%), 조금 필요하다 22명(42.3%), 별로 필요하지 않다 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모두 받았으며,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충실하다 42명(80.8%), 매우 충실하다 10명(19.2%)로 나타났다.

(2)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이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 대상자와의 상담기술은 대부분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해권고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은 약간 필요한 것으로,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와 화해권고위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은 대체적으로 약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	0 (0%)	0 (0%)	0 (0%)	16 (30.8%)	36 (69.2%)
대상자와의 상담기술	0 (0%)	0 (0%)	0 (0%)	16 (30.8%)	36 (69.2%)
화해권고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	0 (0%)	0 (0%)	16 (30.8%)	30 (57.7%)	6 (11.5%)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	6 (11.5%)	8 (15.4%)	26 (50.0%)	10 (19.2%)	2 (3.8%)
화해권고위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	0 (0%)	0 (0%)	10 (19.2%)	24 (46.2%)	18 (34.6%)

(3)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

화해권고위원 운영은 아래 <표 12>와 같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해권고위원 관리는 대부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렇다 28명(53.8%), 아니다 24명(46.2%)로 나타났으며,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가 좀더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그렇다 46명(88.5%), 아니다 6명(11.5%)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위원의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 비율은 비슷해야 함 40명(76.9%)으로 나타났다.

<표 12> 화해권고위원 운영

내 용	빈도	백분율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운영	16	30.8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	30	57.7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다	6	11.5
기타	0	0.0

6.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

(1)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면담자와의 사후 교류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다 42명(80.8%)이었으며, 화해권고위원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보람 있다는 약간그렇다 32명(61.5%), 매우그렇다 20명(38.5%)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화해권고위원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는 약간 그렇다 30명(57.7%), 매우 그렇다 20명(38.5%), 보통이다 2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약간 그렇다 32명(61.5%), 매우 그렇다 18명(34.6%), 보통이다 2명(3.8%) 순으로 나타났다.

(2)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어려움

화해권고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래 <표 13>과 같이 시간적 여유는 대부분 약간 그런 것으로, 보수와 관련지식은 대체적으로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시 대상자들은 대부분 협조적으로 나타났으며 사건에 따라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화해권고위원간의 상호협조는 대부분 잘 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적으로 시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

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어려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0 (0%)	2 (3.8%)	6 (11.5%)	36 (69.2%)	8 (15.4%)
보수가 적다.	4 (7.7%)	28 (53.8%)	20 (38.5%)	0 (0%)	0 (0%)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14 (26.9%)	38 (73.1%)	0 (0%)	0 (0%)	0 (0%)
면담시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다.	0 (0%)	36 (69.2%)	6 (11.5%)	2 (3.8%)	8 (15.4%)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2 (3.8%)	8 (15.4%)	38 (73.1%)	4 (7.7%)	0 (0%)
화해권고위원간의 상호협조가 부족하다.	4 (7.7%)	24 (46.2%)	24 (46.2%)	0 (0%)	0 (0%)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0 (0%)	10 (19.2%)	8 (15.4%)	28 (53.8%)	6 (11.5%)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	8 (15.4%)	2 (3.8%)	18 (34.6%)	18 (34.6%)	6 (11.5%)
화해권고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24 (46.2%)	22 (42.3%)	6 (11.5%)	0 (0%)	0 (0%)
대상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0 (0%)	10 (19.2%)	24 (46.2%)	18 (34.6%)	0 (0%)

(3)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보완점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보완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래 <표 14>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를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화해권고위원 워크숍 활성화는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연

수 강화는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 및 권한 강화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원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법원의 예산 지원 강화는 대부분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포상의 확대는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표 14>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보완점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활동사례집 및 회보 발간	2 (3.8%)	22 (42.3%)	24 (46.2%)	2 (3.8%)	2 (3.8%)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	0 (0%)	0 (0%)	18 (34.6%)	26 (50.0%)	8 (15.4%)
화해권고위원 워크숍 활성화	0 (0%)	0 (0%)	12 (23.1%)	36 (69.2%)	4 (7.7%)
교육 및 연수 강화	0 (0%)	0 (0%)	6 (11.5%)	36 (69.2%)	10 (19.2%)
역할 및 권한 강화	4 (7.7%)	14 (26.9%)	28 (53.8%)	4 (7.7%)	2 (3.8%)
법원의 관리 감독 강화	2 (3.8%)	10 (19.2%)	38 (73.1%)	2 (3.8%)	0 (0%)
법원의 예산 지원 강화	0 (0%)	10 (19.2%)	26 (50.0%)	16 (30.8%)	0 (0%)
화해권고위원회에 대한 포상의 확대	0 (0%)	22 (42.3%)	24 (46.2%)	6 (11.5%)	0 (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원칙이 우리의 소년사법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화해권고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분석·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권고위원의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활동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 이 가장 많았고, 사건 담당건수는 10번 정도로 법원의 위촉공고를 보고 비행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참여하였다. 또한 다른 화해권고위원과의 교류는 워크숍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실태를 살펴보면, 면담 소요시간은 90분 이상에서 120분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적정 면담 시간도 90분 이상 120분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년 당 접견 횟수는 모든 화해권고위원들이 2년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견 형태는 화해권고위원 사무실과 분류심사원 방문 및 전화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관계인과의 면담은 화해권고위원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관계인 면담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해권고위원의 면담 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뛰어나나 면담시 부모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과의 협조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시 면담자와 보호소년의 정서적 공감 형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해권고위원이 소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 소년들 반성 및 참회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화해권고결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화해권고결정시 경찰의견서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가장 많이 참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범죄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진술 태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가능성, 피의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으로 성폭력범죄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면담시 소년의 태도, 화해권고위원의 개인차와 의견 결정하는데 있어서 면담시 소년의 태도, 언행, 후회 및 참회의 정도가 화해권고 결정에 매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해권고위원의 역할 및 인식을 살펴보면,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 이전에 화해권고위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화해권고위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이나 화해권고위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면, 화해권고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모두 받았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청소년심리, 비행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교육과 화해권고 활동사례 발표와 토론에 관한 교육, 화해권고위원의 소양교육이 필요한 반면,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의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보수 수준, 정기적인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 비율은 비슷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하는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현재 화해권고위원 운영 및 관리가 좀 더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위원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면담 사후 소년들과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매우 높았으며, 업무에 대한 보람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어려움 중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유형과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답이 많았다. 화해권고위원 활동의 보완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와 화해권고위원 워크숍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의 관리 감독과 법원의 예산 지원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화해권고위원은 금전적 이익과는 별개로 위원별 특성(교육, 상담, 법률전문가)을 고려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정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려는 소통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다. 특히 부모들간의 법적, 소모적 감정싸움이 강해 참여 학생 모두에게 2차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범죄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년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지식 및 경험을 갖춘 화해권

고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화해권고위원 워크숍 활성화를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서로 배우고 잘못된 사례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같은 실수를 여러번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한계로 화해권고제도가 당사자간 합의의 목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화해권고제도에 대해 신뢰하고 조정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연구에 참고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가정법원의 화해권고위원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타 지역을 조사하여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화해권고위원의 인식을 조사하였지만, 화해권고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경험과 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가 재통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범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은경, “소년법상 화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단계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범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pp.51-95.
- 선의중,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pp.35-49.
- 신한미, “소년보호재판의 새로운 시도: 청소년참여법정과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아세아여성법학」, 제14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1, pp.69-102.
- 이용식, “회복적 사범에 대한 비판적 소고”,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pp.285-320.
- 이은영, “소년사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pp.91-113.
- 주재웅,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회복적 사범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천정환, “소년법에서의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8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pp.1-32.
-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하태선, “소년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험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제도 참여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황지태·김지영·원혜욱·김지연,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A-02, 2016.

- Latimer, J., Dowden, C., and Muise, D.,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Practices: A Meta-Analysis”, *The Prison Journal (TPJ)*, Vol.85, Issue. 2, 2005, pp.127-144.
- McCold, P., A Survey of Assessment Research on Mediation and Conferencing, In Walgrave(ed.). *Repositioning Restorative Justice*, 2003.
- Kathleen, D, Mind the gap: restorative justice in theory and practice, in A von Hirsch, J., Roberts, A. E., Bottoms, K. R., and M. S. (eds)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s?”, Oxford and Portland, Orgeon: Hart Publishing, 2003, pp.1-22.
- Kathleen, D, The Limits of restorative justice, in D. Sullivan, and L. Tiff (ed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London: Routledge, 2008.
- Umbreit, M. S., Coates, R. B., and Vos, B.,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A Review of 63 Empirical Studies in 5 Countries”,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eacemaking, Univ. of Minnesota, 2002, pp.31-62.

[ABSTRACT]

Empirical Study on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

- Survey on Awareness of Members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Committee concerning Administrative Condition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

Yoon, Hyun-Seok ** · Jeon, Myung-Gil ***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ncili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2 persons in charge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of juvenile cas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Family Cour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mbers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had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and less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10 cases were involved in helping juvenile delinquents. Second, in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view situ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 cooperation with the parents in the interview was not performed well but the cooperation with the boys was generally good. Also, boys' reflection and repentance were higher. Third, when making the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the statement of the suspect's identity, and the statement of state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sensus were crime related matte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A8018147)

** Professor, Dept. of Police&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criminal history, statement attitude, future plans of life,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activities of the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ed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included empathy for youth psychology, cause and actual condition of flight. In addition, there was a strong opinion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conciliatio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operated more systematically. Finally, it was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the workshop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revit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resolve autonomous conflicts among the parties.

Key Words

Juvenile justice, Juvenile cases, Restorative justic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Compromise Recommendation Committee.